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7일,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4.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9.)

상정,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16.)

상정,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22.)

상정,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 작년에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10% 내외의 세수 추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정성호·최수진·한병도·문진석·안도걸·임광현·차규근·정일영·이원택·박홍근·이종배·윤준병·이해민·김영호·정태호·이용선·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1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